

#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6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17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,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제5호)
-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-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시장은 녹색교통 지역을 제외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5. <u>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 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</u>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<u>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</u> 지정한 특별대책 지역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</p>	<p>제3조(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) ① <u>시장은</u> <u>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</u> <u>녹색교통지역에</u></p>

전법」에 따라 특별대책지  
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 
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 
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 
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 
한다.

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  
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 
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  
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 
시행할 수 있다.